2020 개정세법 주요내용(관세 분야)

1. 중소 · 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감면 신설 (조특법 제118조)

개정된 조특법 제118조는 가공무역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중인 보세공장 제도에 대한 중소 · 중견기업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 · 중견기업의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감면 규정(제22호)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관세법에 따라 보세 공장 설치 ·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중소 · 중견기업의 보세공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2. 12. 31.까지 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와 같은 시설재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특법 개정 전 보세공장에서는 수입원재료의 경우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 가능한 것과 달리 시설재의 경우 관세 납부(통관)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2. 재수입물품 관세 면제 대상 확대

(법 제99조, 시행규칙개정안 제54조)

재수입면세는 원칙적으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사용되지 않고 2년 내 다시 수입된 물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사용된 물품이라도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등에 출품·사용되는 물품이나 임대차·도급계약 등에 따른 일시 사용을 위해 수출된 물품의 경우에도 면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정법은 수출기업 및 국제 경기대회 참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예외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설치·조립·하역장비, 품질측정기기 등 수출 과정에 필요한 물품, 국제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한 일시 반출 운동관련 물품 및 결함으로 1년 내 반품되는 수출물품 등도 면제대상에 포함 시킬 예정입니다.

3.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예외 규정 신설

(FTA특례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제5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세액이 경정된 경우에도 수입자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과 관계없이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FTA협정별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점에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이 경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위와 같은 개정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4. 기타 주요 개정내용

가. 통고처분시 납부할 금액 상향, 통고처분 면제 신설 및 면제기준 설정(법 제311조, 시행령 개정안 제270조의2)

- 벌금 최고액의 20% → 30%로 상향조정될 예정임
-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도입(법 제222조)

- 수입물품의 구매 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 감독과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도입
- 2021. 7. 1.부터 시행. 다만, 시행 당시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2. 6. 30.까지 등록한 것으로 간주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김도열
고문
02-316-4011
dykim@shinkim.com

우도훈
파트너변호사
02-316-1623
dhwoo@shinkim.com

한정화
관세전문위원
02-316-4495
jhhan@shinkim.com

최윤옥
관세전문위원
02-316-1750
jyulmoon@shinkim.com

강건
소속변호사
02-316-4407
gka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